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
------	---

2010. 08. 12.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7월 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0년 7월 13일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재정
경제위원회(2010년 8월 10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서울특별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3차 재정
경제위원회(2010년 8월 12) 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상범 경영기획실장)

가. 제안이유

- 민선5기 시정의 핵심의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실·본부·국 간 분장사무를 통합·조정하는 등 기구를 개편함으로써, 주요시책 추진 기구의 기능을 보강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본청 기구의 기능을 조정하여 문화디자인총괄본부, 도시안전본부, 교육지원국을 신설하고, 균형발전본부, 문화국, 물관리국을 폐지함으로써, 1실 5본부 8국 체제를 1실 8본부 5국체제로 개편함.
 - “경영기획실”에 “감사관”의 평가업무를 이관하고 명칭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함 (안 제5조)
 - “디자인서울총괄본부”와 “문화국”의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디자인총괄본부”를 신설함 (안 제6조)
 - “경쟁력강화본부”에 “홍보기획관”의 마케팅업무를 이관하고 명칭을 “경제진흥본부”로 변경함 (안 제7조)
 - “복지국”에 “여성가족정책관”의 보건·건강업무를 이관하고 명칭을 “복지건강본부”로 변경함 (안 제8조)
 - 교육업무(교육지원, 평생·창의교육)를 전담하는 “교육지원국”을 신설함으로써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함 (안 제11조)
 - “행정국”의 방재기획업무, “도시교통본부”의 도로관리업무, “물관리국”의 사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설·교량안전업무, “소방재난본부”의 지진·시설물 점검업무를 통합하여 “도시안전본부”를 신설함 (안 제15조)
 - “주택국”에 “균형발전본부”의 뉴타운사업을 이관하고 명칭을 “주택본부”로 변경함 (안 제16조)
 - “도시계획국”에 “균형발전본부”의 도심활성화 업무를 이관함 (안 제17조)

-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행정(2)부시장 소속의 동대문디자인프라자·파크 및 신청사 업무를 이관함 (안 제50조)

○ 한시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폐지함 (안 제19조)

다. 주요내용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관련 실·국·본부와 각각 합의하였음

○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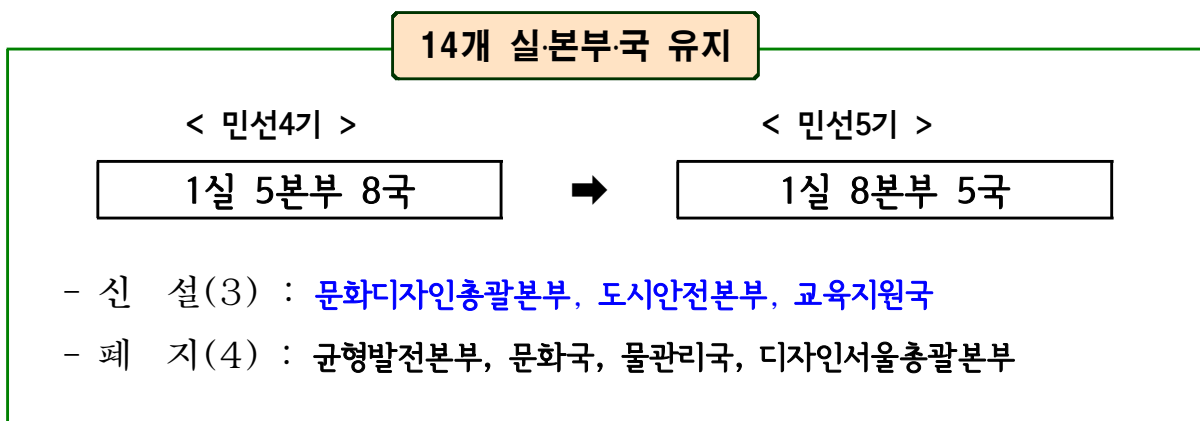
(2) 입법예고(2009. 5. 29. ~ 6. 2.) 결과 : 별첨

(3) 규제심사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임령)

가. 개정안의 개요

- 이번 제224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개정안은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기구의 보강 및 부서간의 통합·조정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특히,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복지, 교육 분야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직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본청기구의 기능을 조정하여 문화디자인총괄본부, 도시안전본부, 교육지원국을 신설하고, 균형발전본부, 문화국, 물관리국과 한시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폐지함으로써, 현행 1실 5본부 8국 체제를 1실 8본부 5국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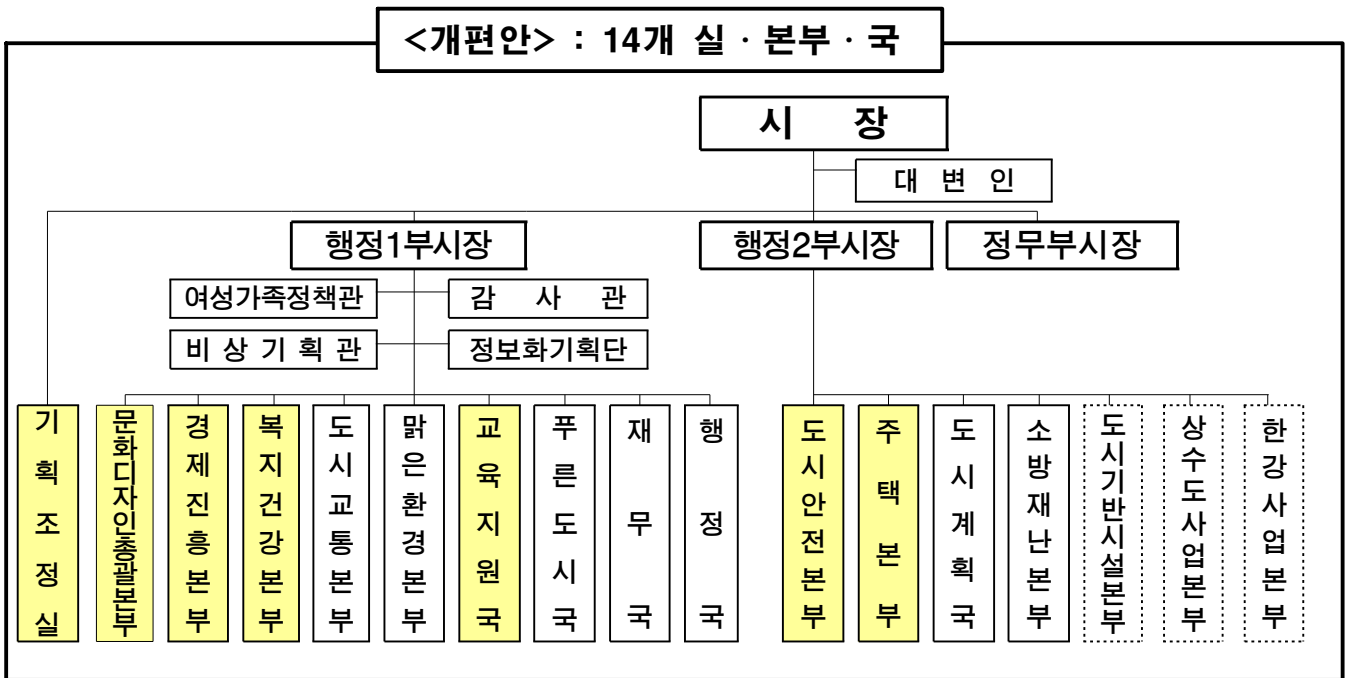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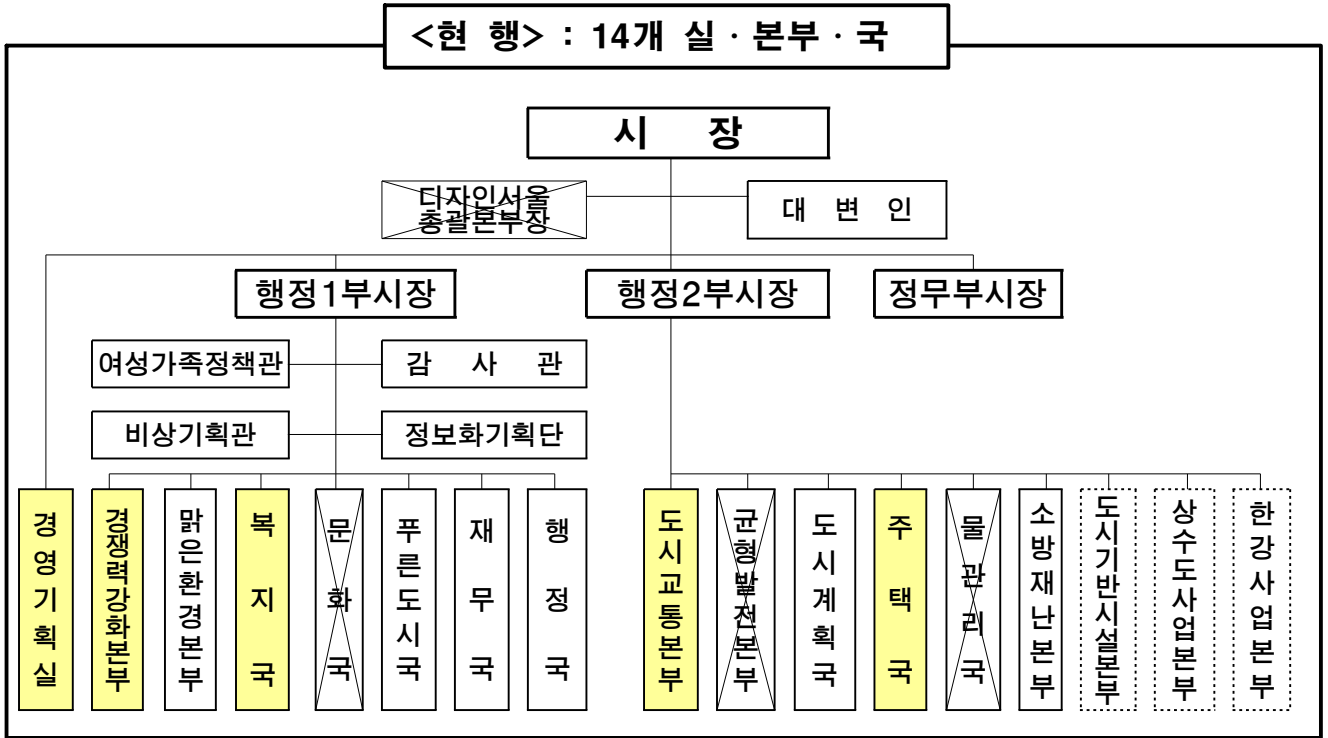


-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기구는
 - 기존의 문화국과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통합하여 '문화디자인총괄본부'를 신설하고,
 - 교육지원사업 및 평생교육사업에 창의교육사업을 추가하여 '교육지원국'을 신설하며,
 - 행정국의 방재기획업무와 도시교통본부의 도로관리업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설·교량안전 분야, 소방재난본부의 지진 및 시설물관리분야, 그리고 물관리국을 통합하여 '도시안전본부'를 신설하는 것임.

- 조직의 확대·축소 및 명칭변경 기구로는
 - 경영기획실에 감사관 평가업무를 이관하여 '기획조정실'로,
 - 경쟁력강화본부와 마케팅업무를 합쳐 '경제진흥본부'로,
 - 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관의 보건·건강업무를 합쳐 '복지건강본부'로,
 - 주택국과 균형발전본부의 뉴타운사업을 통합하여 '주택본부'로,
 - 도시계획국과 균형발전본부의 도심활성화업무를 합쳐 '도시계획국'으로,
 -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건설업무와 신청사담당관 및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을 이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각각 변경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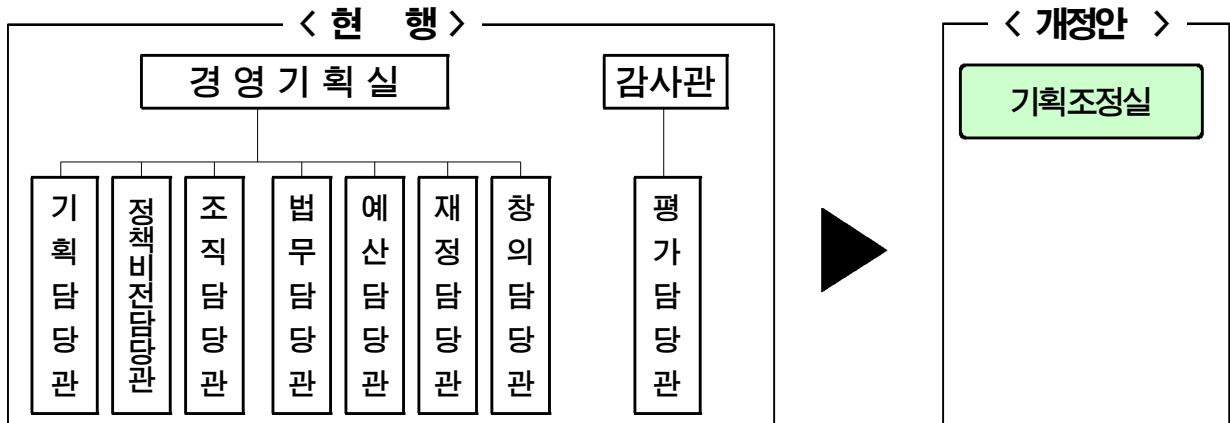
- 폐지되는 기구는
 - 물관리국이 도시안전본부와 통합되며, 균형발전본부의 뉴타운사업과 도심활성화 업무가 각각 주택본부와 도시계획국으로 이관되고, 문화국이 문화디자인총괄본부로 개편함에 따라 물관리국, 균형발전본부, 문화국,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폐지됨.

【참고】 조직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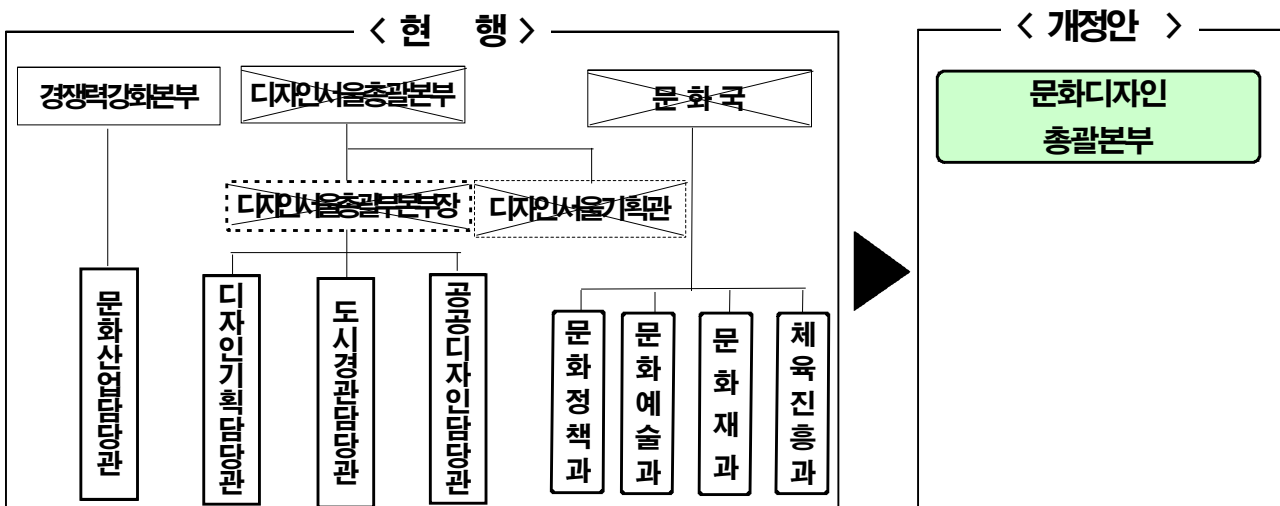
나. 세부검토

1) 경영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 변경(안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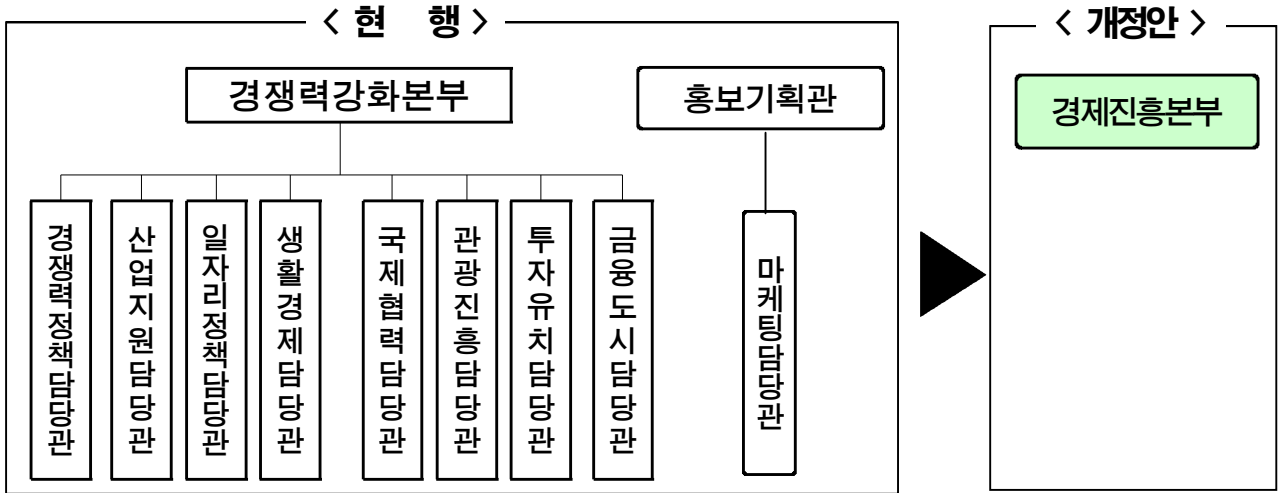
- 기존의 경영기획실과 감사관의 평가업무를 통합하여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려는 사항임. 이는 기획·예산·조직·평가를 일관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기획조정실’이라는 명칭은 중앙행정조직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2) ‘문화디자인총괄본부’의 신설(안 제6조)



-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수준 높고 지속적인 문화·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국’과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통합하고 경쟁력강화본부의 문화산업 육성업무를 흡수하여 ‘문화디자인총괄본부’를 신설하는 것임.
- 2007. 4. 16 설립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시장급의 본부장을 영입하는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도시디자인분야에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해오면서 현재의 1본부 3담당관, 정원 85명으로 확대(현원 100명, 2010년도 예산 1,019억 5,100만원)되었음.
-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의 경쟁력강화본부의 패션·영상 등 문화산업 기능과 문화국의 문화예술정책 및 체육업무, 디자인 서울총괄본부의 공공디자인, 산업디자인 업무를 통합하여 문화와 디자인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서울의 디자인 정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기능과 인력조정 없이 문화국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직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단순하게 통합하려는 것은 문화보다 디자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총괄본부”는 “7개 본부”의 상위부서로 혼돈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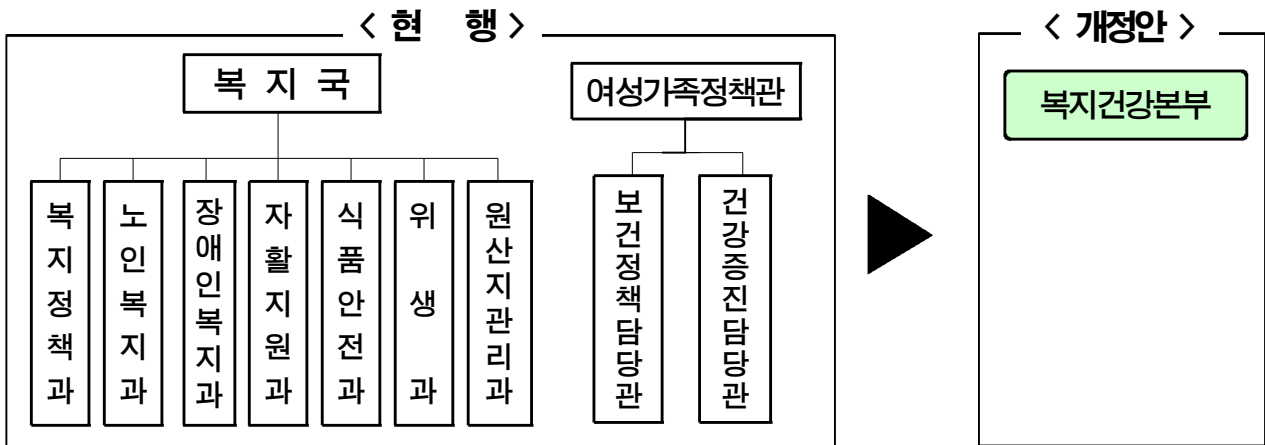
3) 경쟁력강화본부를 ‘경제진흥본부’로 명칭변경(안 제7조)



- 도시마케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홍보기획관의 마케팅업무를 경쟁력강화본부의 관광·국제협력·투자유치·외국인지원업무와 연계 통합하고, 그 명칭을 경제진흥본부로 변경하는 한편, ‘G20정상회의지원단’을 행정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이는 경쟁력강화본부를 경제·일자리분야와 관광마케팅 분야로 기능을 구분하여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업무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경제 진흥 및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가속화하고 관광마케팅 분야를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한편, G20 정상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 지원단(1단, 2반 4팀, 총16명, 존속기한 2010년 12.31 까지)”을 한시기구로 운영해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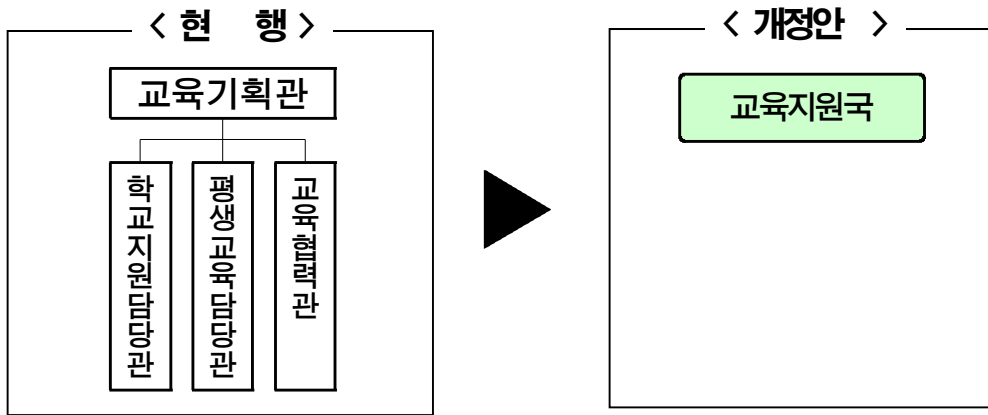
- 동 업무는 G20 정상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행사지원, 대내·외 협력 기능, 기획지원 등과 같이 중앙정부와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관업무를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지원업무 기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4) '복지건강본부'의 확대개편(안 제8조)



- 현행 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관의 보건정책 및 건강증진업무를 '복지건강본부'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 이는 문화·교육·주택 분야 등으로 확장되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보건관련기능을 공중보건 차원을 넘어 시민전체의 건강이라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로 발전시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생각됨.

5) ‘교육지원국’의 신설(안 제11조)



- 교육지원업무 및 평생교육 업무, 그리고 창의교육 업무를 전담해오던 경영기획실 소관의 교육기획관을 별도 “교육지원국”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교육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방과 후 학교 등 공교육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창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그러나, 현재 경영기획실소속 교육기획관을 별도 교육지원국으로 독립하여 ‘교육지원정책 수립, 교육분야 지원, 교육격차 해소’, ‘평생학습체계 구축, 평생학습 지원’, ‘창의교육’ 등의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그 기능과 역할을 볼 때, 교육청의 일부 교육정책 등을 서울시가 관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정부차원의 각종 교육정책 수립·집행 등은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미 서울시교육청에도 “교육정책국”¹⁾, “평생교육국”, “교육지원국”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서울

1) 16개 시·도교육청에는 모두 교육국 또는 교육정책국이 설치·운영[교육국 : 14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 : 4개 시·도교육청(서울·부산·대구·제주)] 되고 있음.

시의 교육지원국 신설은 서울시교육청 “국(局)”의 명칭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도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하에 교육청에 대한 집행부의 주된 역할은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협조·보완하는 것이므로, 교육지원국 신설은 「헌법」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참고자료】

▶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지방자치법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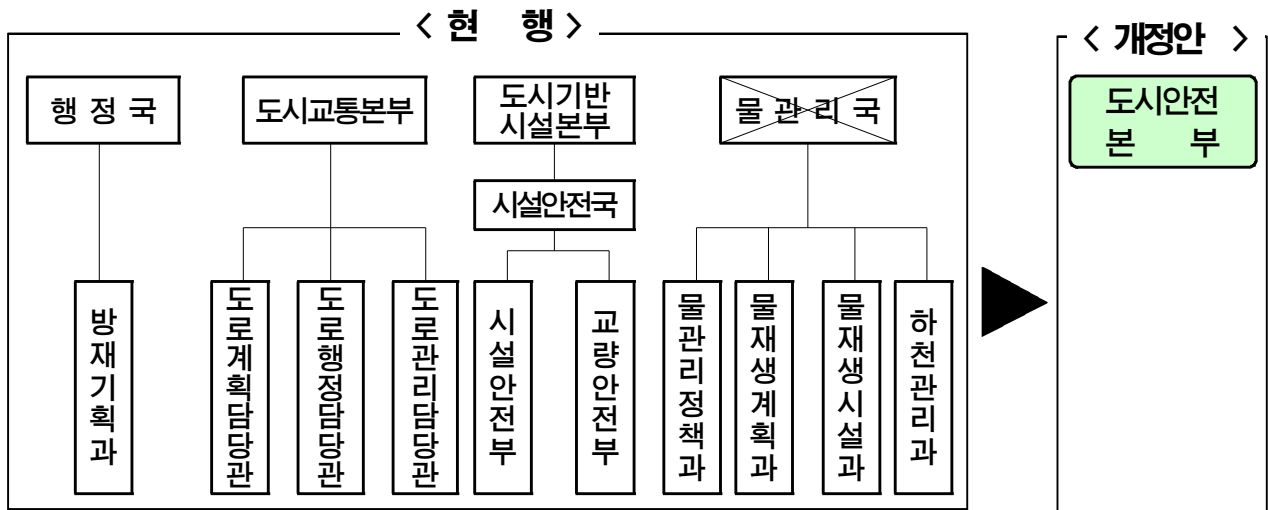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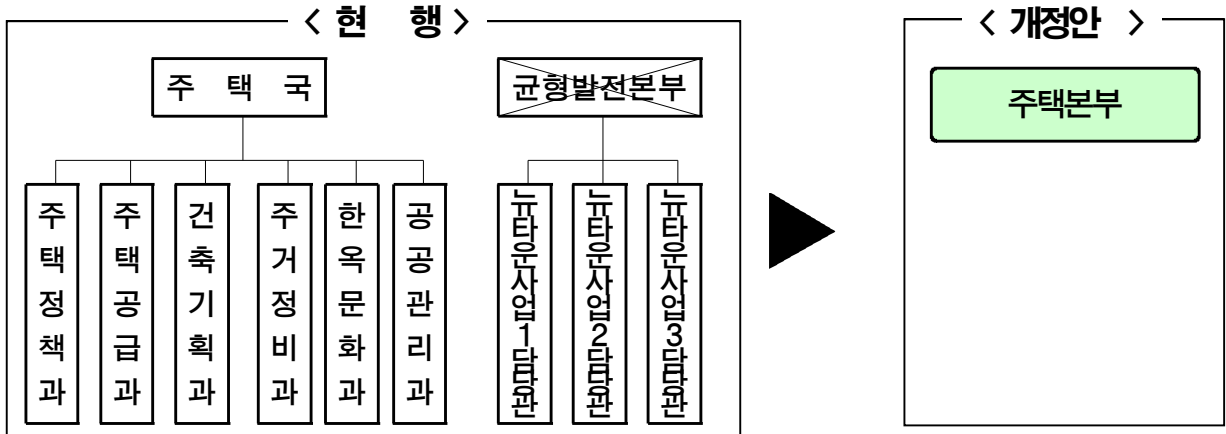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보면, 집행부의 “국(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국(局) 신설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6) ‘도시안전본부’의 신설(안 제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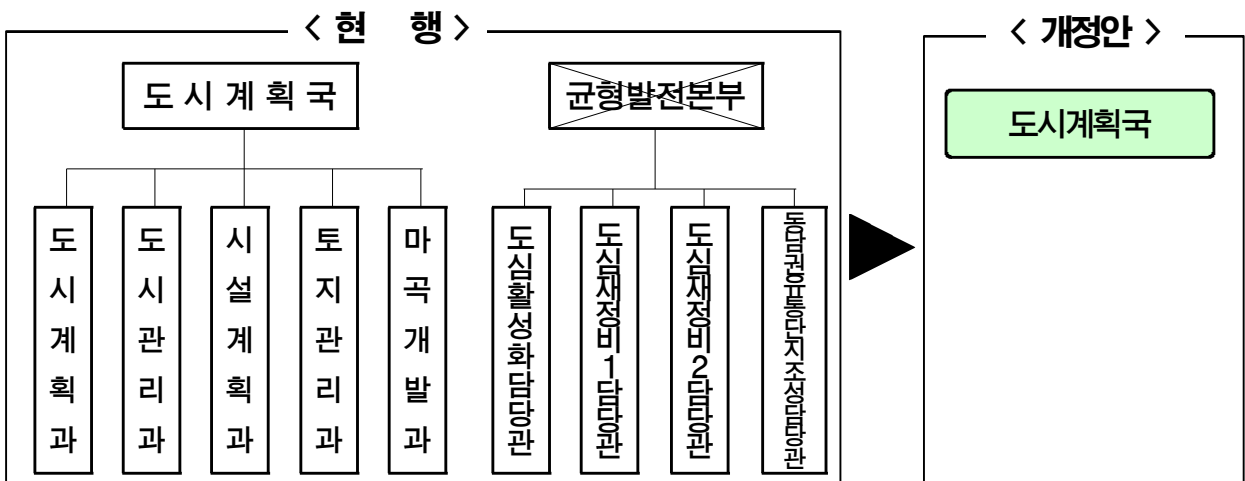
- 현행 행정국의 방재기획업무와 도시교통본부의 도로관리업무, 그리고 물관리국,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설안전·교량안전업무, 소방재난본부의 지진 및 시설물 점검업무 등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도시안전본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 이는 도시노후화에 따른 도로, 교량, 하천, 하수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및 재난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예방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봄.

7) '주택본부'로 명칭변경(안 제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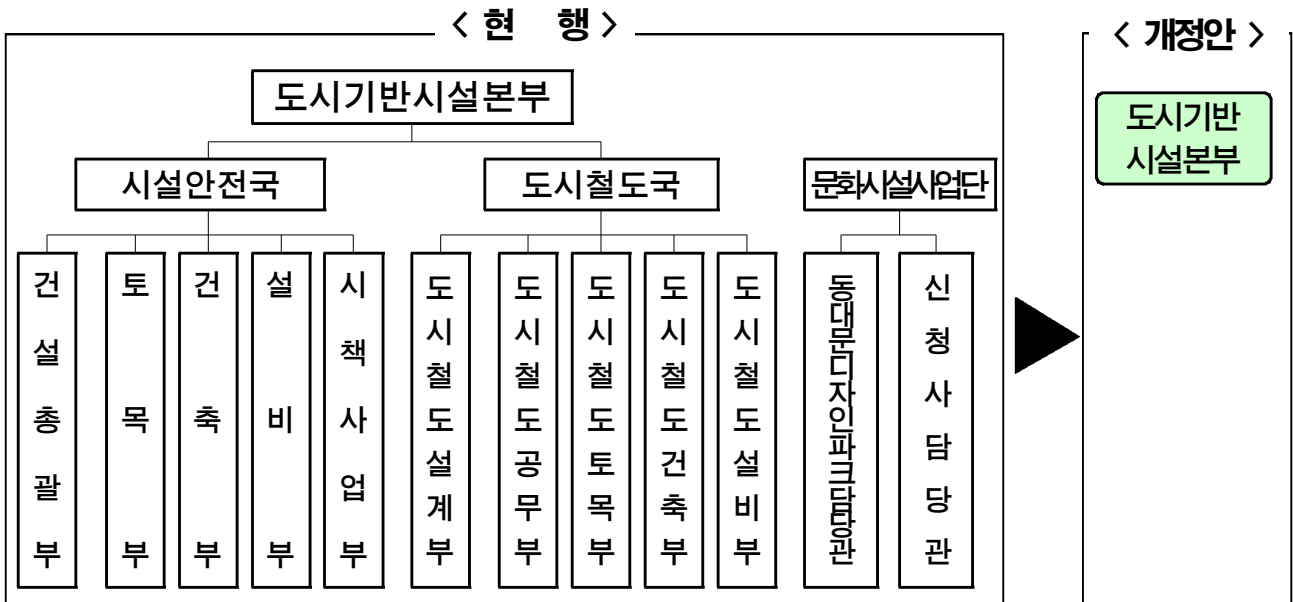
- 현행 주택국과 균형발전본부의 뉴타운사업을 통합하여 주택본부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 주택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주거정비 기능을 통합수행하기 위해 주택본부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뉴타운 사업이나 주택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음.

8) '도시계획국'의 확대 개편(안 제17조)



- 도시계획국과 균형발전본부의 도심활성화업무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체계적 비전을 정립하고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업무를 ‘도시계획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9) 시설공사 부서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일원화(안 제50조)



-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문화시설사업단(동대문 디자인파크 담당관, 신청사 담당관)으로 이원화된 시설공사업무를 효율적 공사업무 추진을 위해 일원화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되나 도시기반 시설본부의 통솔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 도시철도국(5개부서)을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10) '도시교통본부'의 정책기능 강화(안 제9조 관련)

- 개정안은 도시교통본부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1)부시장 산하로 이관 배치하고, 도로기능은 신설되는 도시안전본부로 이관하는 것임.
- 현행 도시교통본부는 교통계획 및 버스·택시 등 정책기능과 도로기능을 병행하고 있어 통솔범위가 넓어 이를 조정하는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음.

11)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 변경(안 제103조 및 안 제104조)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의 '교통방송본부장'이라는 명칭이 대외기관 및 단체 등과 방송업무 제휴시 대표성이 없는 소속 부서장으로 잘못 이해하는 등 대외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 기관장의 명칭을 "본부장"에서 "대표"로 변경 요청한 것임.
- 그러나 "교통방송"의 방송국으로 허가된 대표는 서울특별시장이므로 교통방송본부장 명칭은 현행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제7대 상임위원회에서 "본부장"으로 수정(제216회 임시회, 2009.7.8)·폐기(제222회 임시회, 2010.6.24)된 바 있으며, 전국 15개 시·도 산하 지방자치단체 조직 중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의회에서 반대한 기관장명칭 변경 건을 재요구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임을 지적함.

12)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안 부칙 제3조)

- 동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이를 참조하고 있는 다른 조례인 「사무위임조례」 등 18개의 자치법규가 일괄 정비됨으로써 자치 법규의 현실성과 적시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금번 개정조례안의 교육지원국의 신설은 지방교육자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교육청에 존재하고 있는 기구와도 중첩되므로, 현행대로 경영기획실 소관의 '교육기획관' 체제를 존속시키는 것이 어떤지 ?
 - 경영기획실장 답변 : 서울시에서 교육의 본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예산문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지원·협력하는 차원이며, 예산 집행하는 방법도 교육청에 진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교육지원국의 신설은 교육청과의 원활한 의견소통을 위한 기구이지 서울시가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미가 아님.
- 경쟁력강화본부의 관광진흥업무를 경제진흥본부에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경영기획실장 답변 : '관광'이라는 개념이 여행하면서 단순히 보고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서울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제진흥본부에 두도록 하는 것임.
-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대표'로 사용하는 것은 교통방송의 대표는 방송허가권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때문에 적정성과 타당성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경영기획실장 답변 : 교통방송 기관장에 대한 대외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교육지원국 신설은 「헌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방교육자치 이념을 침해할 수 있어, 집행부의 역할을 지방교육에 대한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수정내용

- 안 제6조 중 “문화디자인총괄본부”를 “문화디자인본부”로 변경함.
- 안 제11조 중 “교육지원국”을 “교육협력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지원정책 수립”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창의인재육성 등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을 “창의인재육성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함.
- 안 제103조 및 안 104조 중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본부장”에서 “대표”로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본부장’으로 함.

9.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일자 : 2010년 8월 12일

발 의 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교육지원국 신설은 「헌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방교육자치 이념을 침해할 수 있어, 집행부의 역할을 지방교육에 대한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골자

가. “문화디자인총괄본부”를 “문화디자인본부”로 변경함.(안 제6조)

나. “교육지원국”을 “교육협력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지원정책 수립”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창의인재 육성 등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을 “창의인재육성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함. (안 제11조)

다.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본부장”에서 “대표”로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본부장’으로 함.(안 제103조 및 안 104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중 “(문화디자인총괄본부) 문화디자인총괄본부장”을 “(문화디자인본부) 문화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안 제11조 중 “(교육지원국) 교육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를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교육지원정책 수립, 교육분야 지원,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분야 지원,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창의인재 육성 등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을 “창의인재육성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103조 중 “(대표) 교통방송에 대표를 두고, 대표는 시장의 명을 받아”를 “(본부장) 교통방송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로 한다.

안 104조 중 “대표는”을 “본부장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문화디자인총괄본부) <u>문화디자인총괄본부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제6조(문화디자인본부) <u>문화디자인본부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지원국) <u>교육지원국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교육지원정책 수립, 교육분야 지원, 교육격차 해소</u> 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체계 구축,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3. <u>창의인재 육성 등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u>	제11조(교육협력국) <u>교육협력국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교육분야 지원, 교육격차 해소</u> 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체계 구축,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3. <u>창의인재 육성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u>
제103조(본부장) 교통방송에 <u>본부장을</u> 두고, <u>본부장은</u>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3조(대표) 교통방송에 <u>대표를</u> 두고, <u>대표는</u>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3조(본부장) 교통방송에 <u>본부장을</u> 두고, <u>본부장은</u>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4조(소관사무) <u>본부장은</u>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04조(소관사무) <u>대표는</u>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04조(소관사무) <u>본부장은</u>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실、국、본부”를 “실、본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영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쟁력강화본부、맑은환경본부、복지국、문화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도시교통본부、균형발전본부、도시계획국、주택국、물관리국”을 “**문화디자인본부**、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맑은환경본부、**교육협력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도시안전본부、주택본부、도시계획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을 “경영기획실”에서 “기획조정실”로 하고, 본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8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과、목표관리, 행정서비스、지시사항、위험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재정계획, 예산기준, 기금、부채관리,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제6조를 제7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문화디자인본부) 문화디자인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 문화단체, 예술단체,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디자인서울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7. 공공디자인정책 수립, 공공디자인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디자인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진흥본부) 경제진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진흥 및 지역산업정책,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2.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벤처산업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 상공업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지원, 농수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6.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7.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진흥 및 관광유치 총괄에 관한 사항
9. 도시마케팅에 관한 사항
10. 국제교류 협력,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투자유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건강본부) 복지건강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수립, 생활보장,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장묘행정 및 고령화대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재활시설,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4. 노숙인 구호 및 자활에 관한 사항
5. 보건, 의무, 약무, 전염병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7. 식품안전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중위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9조로 하며, 제9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삭제하고, 제9조제1호의 “계획, 관리”를 “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조 제2호의 “구축 및 운영”을 “구축, 운영 및 교통정보화”로, 제3호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을버스의 노선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9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여 “교통시설의 설치·관리, 교통정보화 사업”을 “교통운영종합계획 수립, 교통시설의 설치, 관리”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남권유통단지에 관한 사항
7. 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존의 제7조를 제10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맑은환경본부) 맑은환경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행정, 환경계획, 환경교육,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2.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자동차 보급, 경유차저공해화사업,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승용차요일제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도로·가로의 청결, 생활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제14조를 삭제하고, 기존의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조제1호의 “공원”을 “공원녹지정책 수립, 공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기존의 제5호를 제2호로 하여 “조경계획·조성 및 관리”를 “조경·녹지의 계획·조성·관리”로 하며, 기존의 제6호를 제3호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교육협력국) 교육협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분야 지원,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체계 구축,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의인재 육성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재무국) 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약·지출·결산 등 회계사무 총괄
2. 재산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심사, 공사계약 심사·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관리 업무, 세무전산 시스템 개발·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운영, 시설관리, 문서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2. 인사행정, 경력개발, 보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 공무원단체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행정·재정 지원 업무, 민간협력, 자원봉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G20정상회의지원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7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도시안전본부) 도시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예방복구대책의 수립·조정
2. 도로건설사업계획의 수립·조정
3. 도로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로, 도로(부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6. 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하수·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수도종합계획 수립·조정
9.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0.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제17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발전종합대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용, 지구 내 건축기준 협의·회신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운용
4. 도시계획시설 지정, 세부조성계획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5. 토지조사·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
6. 입체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8.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래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0. 강북도심활성화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11. 도심상권활성화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청계천남북4대축거점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제목을 “주택국”에서 “주택본부”로 하고, 본문 중 “주택국장”을 “주택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 “수립·운용”을 “개발·수립·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7호로, 기존의 제7호를 제4호로 하며, 기존의 제4호를 제6호로 하여 “주거환경 정비”를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수립·조정, 주거환경 정비”로 하고, 기존의 제6호를 제3호로, 기존의 제3호를 제8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를 제2호로 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물 관리 등”을 “건축기본계획 수립·조정, 건축허가 등”으로 하고, 제5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옥의 보전·진흥에 관한 사항

8. 공공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
10.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한시기구) G20 정상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국에 한시적으로 G20정상회의지원단을 두며, G20정상회의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G20 정상회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G20 정상회의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회 기념 문화행사 및 숙박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부·유관기관 협의, 교통지원 대책 등에 관한 사항

제48조제1항의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14조에 따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관리, 각종 공사의 시공”을 “각종 공사의 시공”으로 한다.

제5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의 “건축·조경 그 밖에”를 “건축, 조경, 그 밖에”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교량·치수시설·하수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건설공사의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동대문디자인프라자·파크 조성, 흥인문로 지하공간 개발에 관한 사항
5. 신청사 건립, 한강예술섬 조성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토목·궤도공사, 전기설비, 신호설비, 차량설비 등 각종 공사의 계획 수립 및 시공 감독

제4장제17절의 제목을 “서울특별시도로교통사업소”에서 “서울특별시도로사업소”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도로교통사업소”를 “도로사업소”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교통질서 위반차량·과적차량”을 “과적차량”으로 한다.

제104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통방송을 통한 교통정보·교통지식의 제공
2.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별표 5의 제목 중 “도로교통사업소”를 “도로사업소”로, 구분란의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서부도로교통사업소”, “남부도로교통사업소”,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성동도로교통사업소”, “강서도로교통사업소”를 각각 “동부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문화디자인본부”로, “경영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경쟁력강화본부”를 “경제진흥본부”로, “복지국”을 “복지건강본부”로, “문화국”을 “문화디자인본부”로, “주택국”을 “주택본부”로, “물관리국”을 “도시안전본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편성기관(경영기획실장을 말한다)”을 “예산편성기관(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제18조제1항제1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기금 담당 실、국장”을 “당해 기금 담당 실、본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실·국장 및 소방재난본부장”을 “실·본부·국장”으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며, 제18조제1항제3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제6조제3항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물관리국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물관리국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물관리국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교통사업소”를 “도로사업소”로,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생략)	제1조~제3조 (현행과 같음)
제2장 본청	제2장 본청
제4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의 주요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조직관리·예산·법제·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u>경영기획실</u> 을 둔다.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경쟁력강화본부·맑은환경본부·복지국·문화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도시교통본부·균형발전본부·도시계획국·주택국·물관리국·소방재난본부</u> 를 둔다.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의 주요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조직관리·예산·법제·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u>기획조정실</u> 을 둔다.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문화디자인본부·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맑은환경본부·교육협력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도시안전본부·주택본부·도시계획국·소방재난본부</u> 를 둔다.
제5조(경영기획실) <u>경영기획실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의회·광역행정에 관한 사항 〈신 설〉	제5조(기획조정실) <u>기획조정실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과 같음) 2. 성과·목표관리, 행정서비스, 지시사항·위험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미래시정비전·전략제시 및 주요	3. (현행 제2호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정책개발·진도분석에 관한 사항</p> <p>3. 조직·정원관리, 제도개선 및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p> <p>4. 창의시정 추진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5. 자치법규안의 심사, 행정심판,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p> <p>6.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p> <p>7. 재정계획, 예산기준, 기금·부채관리,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p> <p>8. 교육 분야 지원·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8. (현행 제4호와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p>7. 재정계획, 예산기준, 기금·부채관리,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p> <p>〈삭 제〉</p>
<p>〈신 설〉</p>	<p>제6조(문화디자인본부) 문화디자인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p> <p>2. 문화·예술·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 문화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p> <p>3.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p> <p>4. 체육진흥,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p> <p>5. 디자인서울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제6조(경쟁력강화본부) <u>경쟁력강화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경쟁력 강화정책 총괄 기획·조정</u> 2. <u>관광진흥, 관광홍보·마케팅 총괄에 관한 사항</u> 3. <u>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4. <u>6대 신성장동력산업에 관한 사항</u> 5. <u>지역산업정책의 총괄·조정, 중소기업 지원 육성</u> 6. <u>첨단산업, 벤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u> 7. <u>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 상공업에 관한 사항</u> 8. <u>고용안정, 창업지원 및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u> <p style="text-align: right;">〈신설〉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u>농수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u>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u>도시경관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7. <u>공공디자인정책 수립, 공공디자인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u> 8. <u>문화디자인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p>제7조(경제진흥본부) <u>경제진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경제진흥 및 지역산업정책,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u> 8. <u>관광진흥 및 관광유치 총괄에 관한 사항</u>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u>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벤처산업에 관한 사항</u>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현행 제6조제7호와 같음) 5. <u>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u> 6. <u>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u> 7. <u>창업지원에 관한 사항</u> 4. <u>전통시장 지원, 농수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9. 도시마케팅에 관한 사항
10. 국제 통상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0. 국제교류 협력,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의 총괄·조정	11. 외국인 투자유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금융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2.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맑은환경본부) 맑은환경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맑은환경본부) 맑은환경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에너지 행정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행정, 환경계획, 환경교육,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2.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사업장 관리, 씨앤지(CNG)충전소 확충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자동차 보급, 경유차저공해화사업,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승용차요일제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및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4. 환경계획, 환경교육, 환경협력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5.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7조제5호와 같음)
6.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장 관리, 도로 및 가로청결에 관한 사항	5. 도로·가로의 청결, 생활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p>제8조(복지국)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지정책의 수립, 생활보장,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정책 및 시설운영, 장묘행정 및 고령화대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재활시설·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4. 노숙인 구호 및 자활에 관한 사항 5. 위생행정의 총괄·조정^{신설}에 관한 사항 6. 식품안전의 관리^{신설}에 관한 사항 	<p>제8조(복지건강본부) 복지건강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지정책의 수립, 생활보장,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장묘행정 및 고령화대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재활시설·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보건, 의무, 약무, 전염병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8조제6호와 같음) 8. 공중위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p>제9조(문화국) 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정책의 수립,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 정기간행물,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지원, 시설에 관한 사항 	<p><삭제></p>
<p><신설></p>	<p>제11조(교육협력국) 교육협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분야 지원, 교육격차 해소에

현행	개정안
<p>제10조(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원 조성·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2. <u>산림 및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u> 3. <u>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u> 4. <u>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u> 5. <u>조경계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6. <u>민간녹화지원, 시설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p><u>관한 사항</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u>평생학습체계 구축,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u> 3. <u>창의인재 육성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u> <p>제12조(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원녹지정책 수립, 공원의 조성·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4. (현행 제10조제2호와 같음) 5. (현행 제10조제3호와 같음) 6. (현행 제10조제4호와 같음) 2. <u>조경·녹지의 계획·조성·관리에 관한 사항</u> 3. (현행 제10조제6호와 같음)
<p>제11조(재무국) 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계약·지출·물품관리 등 회계사무 총괄, 재산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u>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u>물품구매 심사, 공사계약 심사·조정 등에 관한 사항</u> 3. <u>지방세,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u> 4. <u>지방세 부과징수, 체납관리 업무,</u> 	<p>제13조(재무국) 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계약·지출·결산 등 회계사무 총괄</u> 2. <u>재산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u> 3. <u>물품구매 심사, 공사계약 심사·조정 등에 관한 사항</u> 4. (현행 제11조제3호와 같음) 5. <u>지방세 부과·징수, 체납관리 업</u>

현 행	개 정 안
<p>세무전산 시스템 개발·운영 등에 관한 사항</p>	<p>무, 세무전산 시스템 개발·운영 등에 관한 사항</p>
<p>제12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사운영·시설관리</u> 및 의전에 관한 사항 2. <u>인사, 후생복지, 인력개발, 직무분석 및 공무원평가</u>에 관한 사항 <u><신 설></u> 3. 자치구 <u>행정·재정 지원 등 자치구업무</u>에 관한 사항 4. <u>민간협력·자원봉사 및 문서관리</u>에 관한 사항 5. <u>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예방 복구 대책 수립·조정</u> <u><신 설></u> <u><신 설></u> 	<p>제14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사운영, 시설관리, 문서관리</u> 및 의전에 관한 사항 2. <u>인사행정, 경력개발, 보수, 성과평가</u>에 관한 사항 3. <u>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 공무원단체운영</u>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u>행정·재정 지원 업무, 민간협력, 자원봉사 관리</u>에 관한 사항 <u><삭 제></u> <u><삭 제></u> 5. <u>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u>에 관한 사항 6. <u>G20정상회의지원단 업무</u>에 관한 사항
<p>제13조(도시교통본부) 도시교통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정책의 수립, 교통제도의 개선 및 도시철도 <u>계획·관리</u> 2. 교통운영정보시스템(TOPIS) <u>구</u> 	<p>제9조(도시교통본부) 도시교통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정책의 수립, 교통제도의 개선 및 도시철도 <u>계획·관리</u>에 관한 사항 2. 교통운영정보시스템(TOPIS) <u>구</u>

현 행	개 정 안
<p>3.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p> <p>4. 도심상권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5.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및 이주전 문상가 건립에 관한 사항</p> <p>6.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p> <p>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p> <p>8. 재래시장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p>	<p>제15조(도시안전본부) 도시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예방복구 대책의 수립·조정</p> <p>2. 도로건설사업계획의 수립·조정</p> <p>3. 도로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p> <p>4. 도로, 도로(부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5.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p> <p>6. 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7. 지하수·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p> <p>8. 하수도종합계획 수립·조정</p> <p>9.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p> <p>10.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11. 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p>
<p>〈신 설〉</p>	

현행	개정안
<p>제15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발전종합대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운영 3.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영, 지구 내 건축기준 협의·회신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 지정, 세부조성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토지조사·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7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 제15조제1호와 같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운영 2.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영, 지구 내 건축기준 협의·회신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15조제4호와 같음) 4. 도시계획시설 지정, 세부조성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5. 토지조사·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 6. 입체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8.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래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0. 강북도심활성화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11. 도심상권활성화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청계천남북4대축거점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p>제16조(주택국) 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정책의 수립·운영 및 공공주 	<p>제16조(주택본부) 주택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정책의 개발·수립·운영 및

현행	개정안
<p>택 건설에 관한 사항</p> <p>2. 아파트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p> <p>3. 공공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관리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4.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5. 건축허가 및 건축물 관리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p> <p>6. 위법 건축물의 단속·관리에 관한 사항</p> <p>7.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p> <p>7. (현행 제2호와 같음)</p> <p>8. 공공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관리에 관한 사항</p> <p>5. 한옥의 보전·진흥에 관한 사항</p> <p>6.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수립·조정,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p> <p>9.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p> <p>2. 건축기본계획 수립·조정,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p> <p>3. (현행 제6호와 같음)</p> <p>4. (현행 제7호와 같음)</p> <p>10.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p> <p>1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p>
<p>제17조(물관리국) 물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수질보전, 토양오염방지 및 광역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2. 지하수 및 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p> <p>3.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조정</p> <p>4. 하수도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p> <p>5. 하수시설의 계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6. 하천·유수지의 관리 및 풍수해</p>	<p>〈삭제〉</p>

현행	개정안
<p><u>대책에 관한 사항</u></p> <p>제18조(소방재난본부) (생략)</p> <p>제19조(한시기구) ① 도시디자인개선 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두며,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경관정책·계획 수립 및 사 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정책·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p>② G20 정상회의 지원에 관한 사 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G20정상회의지원단을 두며, G20 정상회의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G20 정상회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2. 대회기념 문화행사 및 숙박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부·유관기관 협의 및 교통지 원 대책 등에 관한 사항 <p>제3장 직속기관</p>	<p>제18조(소방재난본부) (현행과 같음)</p> <p>제19조(한시기구) G20 정상회의 지 원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국에 한시적으로 G20정상회의 지원단을 두며, G20정상회의지원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G20 정상회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G20 정상회의 홍보 지 원에 관한 사항 2. 대회 기념 문화행사 및 숙박시 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부·유관기관 협의, 교통지원 대책 등에 관한 사항 <p>제3장 직속기관</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제47조 (생략)</p> <p>제4장 사업소 제1절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p> <p>제48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u>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관리, 각종 공사의 시공</u> 및 도시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20조~제47조 (현행과 같음)</p> <p>제4장 사업소 제1절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p> <p>제48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u>각종 공사의 시공</u> 및 도시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9조(본부장) (생략)</p> <p>제50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u>도로·교량·치수시설·하수시설의 공사 및 안전</u>에 관한 사항</p> <p>2. <u>건축·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u>에 관한 사항</p> <p>3. <u>각종 건설공사의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u>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49조(본부장) (현행과 같음)</p> <p>제50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u>도로·교량·치수시설·하수시설의 공사</u>에 관한 사항</p> <p>2. <u>건축, 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u>에 관한 사항</p> <p>3. <u>각종 건설공사의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u>에 관한 사항</p> <p>4. <u>동대문디자인프라자·파크 조성, 홍인문로 지하공간 개발</u>에 관한 사항</p> <p>5. <u>신청사 건립, 한강예술섬 조성</u>에</p>

현행	개정안
<p>4. 도시철도건설공사 기본설계·실시 설계</p> <p>5. 도시철도건설의 민자유치 계획 수립</p> <p>6.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토목·궤도공사, 전기설비, 신호설비, 차량설비 등 각종 공사의 <u>계획·시공감독</u></p> <p>7. 그 밖에 도시철도건설에 관한 사항</p> <p>제2절~제16절 (생략)</p> <p>제17절 <u>서울특별시도로교통사업소</u></p> <p>제99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도로시설물 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 및 <u>강서도로교통사업소</u>(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100조(소장) (생략)</p> <p>제10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u>교통질서 위반차량·과적차량</u>에</p>	<p><u>관한 사항</u></p> <p>6. (현행 제4호와 같음)</p> <p>7. (현행 제5호와 같음)</p> <p>8.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토목·궤도공사, 전기설비, 신호설비, 차량설비 등 각종 공사의 <u>계획 수립 및 시공 감독</u></p> <p>9. (현행 제7호와 같음)</p> <p>제2절~제16절 (현행과 같음)</p> <p>제17절 <u>서울특별시도로사업소</u></p> <p>제99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도로시설물 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 및 <u>강서도로사업소</u>(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0조(소장) (현행과 같음)</p> <p>제10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u>과적차량</u>에 대한 단속 및 단속원</p>

현행	개정안
<p>대한 단속 및 단속원 관리에 관한 사항</p> <p>2.~4. (생략)</p> <p>제18절 서울특별시교통방송</p> <p>제102조 ~ 제103조 (생략)</p> <p>제104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교통방송을 통한 교통정보·교통지식의 제공</p> <p>2.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p> <p>3.~5. (생략)</p> <p>제19절 (생략)</p>	<p>관리에 관한 사항</p> <p>2.~4. (현행과 같음)</p> <p>제18절 서울특별시교통방송</p> <p>제102조 ~ 제103조 (현행과 같음)</p> <p>제104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교통방송을 통한 교통정보·교통지식의 제공</p> <p>2.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p> <p>3.~5. (현행과 같음)</p> <p>제19절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도로교통사업소 위치(제99조제2항 관련)		【별표 5】 도로사업소 위치(제99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치	구 분	위 치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생 략)	동부도로사업소	(현행과 같음)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생 략)	서부도로사업소	(현행과 같음)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생 략)	남부도로사업소	(현행과 같음)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생 략)	북부도로사업소	(현행과 같음)
성동도로교통사업소	(생 략)	성동도로사업소	(현행과 같음)
강서도로교통사업소	(생 략)	강서도로사업소	(현행과 같음)